

의안번호	2208049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5.05.12.
추 계 번호	25C0729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외의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9,400만원, 2030년 12억 6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8억 9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1,094	1,135	1,178	1,222	1,269	5,897	1,179

주: 본 추계 결과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을 추계하며, 이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의4 (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1항) -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과 -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보·경보 -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- 전자의무기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·분석 - 그 밖에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(현행) 진료정보 침해사고 (개정)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※ 전자의무기록에 한정된 현행 “진료정보 침해사고”의 범위를 진료정보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“진료정보등 침해사고”로 확대함(안 제23조의3)¹⁾	의무규정
		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3조의4 (진료정보등 침해 사고의 예방 및 대 응 등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침해행위로 국한된 현행 “진료정보 침해사고”의 범위를 영상정보시스템, 검사정보시스템 등 전자의무기록 외의 시스템을 포함한 “진료정보등 침해사고”로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

○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라 현재 진료정보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정보보호센터의 인건비 증가분을 추계

－ 현재 의료정보보호센터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과 주요병원(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) 대상 상시 관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, 개정안으로 인한 업무 범위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이 요구됨

－ 다만, 전자의무기록 외에 영상정보, 검사정보 등에 대한 침해사고를 처리할 경우 별도의 시스템 구축 또는 서버 용량 확충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, 보건복지부 2025년 예산에 ‘진료정보 침해대응시스템 구축’ 비용²⁾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

1) 안 제23조의3제1항

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

1.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
2.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보·경보
3.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
4. 전자의무기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·분석
5. 그 밖에 진료정보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) 2025년 예산에 따르면, 보건복지부는 “보건복지정보보안시스템”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‘진료정보 침해대응 시스템 구축’ 사업에 5억 6,700만원(진료정보 대응 운영 스토리지 용량 증설 2억 100만원, 진료정보 백

의 시스템 구축 비용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함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외의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고용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계
 - 인건비는 추가로 고용하는 인력 수에 현행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신고대응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수단가를 곱하여 산출
 - (추가 인력) 총 6명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 1인당 침해사고 신고 건수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 건수에 비례한 8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것으로 가정
 -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21건, 전자의무기록 외의 경우 4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, 이를 기준으로 추가 인력을 산출함
 -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에 대한 직원 1인당 연평균 대응 건수인 3.5건을 준용할 경우, 전자의무기록 외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14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함³⁾
 -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인력 구성을 준용하여 14명의 추가 인력 중 8명은 포렌식 분석팀(중급 5명, 초급 3명)에 배정하고, 종합분석팀(중급)과 신고접수상담팀(초급)에도 각각 3명씩 배정함

[표 2] 의료기관 침해사고 신고 현황

(단위: 건수)

구분	2022	2023	2024 ¹⁾	최근 3년 평균
전자의무기록	23	23	17	21
전자의무기록 외	23	39	86	49

주: 1) 2024년은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연환산한 수치임

자료: 보건복지부

업 스토리지 용량 증설 3억 6,600만원), '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개선' 사업에 1억 2,400만원을 배정함
3) 최근 3년 평균 신고건수(49건)/전자의무기록 1인당 처리 신고건수(3.5건)=14.2

- (인건비)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른 2025년 기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급별 연봉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
 - 2025년을 기준으로, 초급 연 6,958만원, 중급 연 7,944만원을 준용
- 추가재정소요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을 추계하며, 이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3] 인건비 단가 전망

(단위: 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초급	69,582,000	72,262,005	74,995,013	77,819,374	80,753,281	83,855,092
중급	79,439,000	82,498,655	85,618,822	88,843,282	92,192,807	95,734,022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

- 개정안에 따라 전자의무기록 외의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억 9,400만원, 2030년 12억 6,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58억 9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구분							
추가재정소요	1,094	1,135	1,178	1,222	1,269	5,897	1,17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